

# 간호법 특별판

제2호

2022년 7월 28일 대한간호협회



## 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8부 능선 넘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계속 진행 ...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남아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전국의 48만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하여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모두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간호법안은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5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세회의에 인건 상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은 간호법안 상정 및 처리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간호법은 후반기 새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의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

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천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쟁을 통해 간호사 부족과 업무 가중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 ... 쟁점 모두 해소

## 합의된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2021년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1년 4월 26일 상정됐다. 여야 3당이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협력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2021년 8월 24일] 간호법 제정안 공청회 국회에서 열려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2021년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얼 낸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 컨설팅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 [2021년 11월 24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상 첫 1차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정기국회 내에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와 토론이 이뤄졌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 [2022년 2월 10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2차 심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열렸다. 2021년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계류 상태에 놓였다가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출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 회의를 2022년 4월 27일 열어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쟁점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들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4차 심의 및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년 5월 9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된 간호법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간호법안이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한 후 통과시켰으며,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진퇴장하며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으며, 이는 전체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거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원문 보기

-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157번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회의록'

### [2022년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2022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어 5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안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안 상정 및 처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앞으로 남은 절차]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 국회 본회의

## 간호법 주요 내용

### ■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 ■ 전문간호사의 업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들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들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 ■ 간호사들의 권리 및 책무

간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금지

누구든지 간호사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 ■ 교육전담간호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 거짓주장으로 국민 혼란 가중시켜

## [바로잡기 1]

### ‘단독처리’ 사실이 아닙니다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쟁점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조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 여야 합의로 쟁점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 마련

□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 만장일치 의결  
–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투표 ※ 단독처리 아님

□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조정된 간호법안 통과  
• 국민의힘 자진퇴장으로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 포기  
• 전체회의 결정 동의를 의미 ※ 단독처리 아님

○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을 발생시킨다?

=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

○ 간호법안 단독처리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균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다.

##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X**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됐다

**X**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다

**X**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X** 간호사의 독단진료를 조장하는 법이다

**X** 보건의료인 원팀을 저해하는 악법이다

## [바로잡기 2]

### 의료전문 변호사의 팩트 체크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NA TV’에 5월 24일 출연한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현)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간호법과 관련된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을 대해 “매우 왜곡된 정보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튜브 영상 13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13편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YouTube 채널에서

### 간호법 정보 한눈에

간협 유튜브 채널 [구독] 신청해주세요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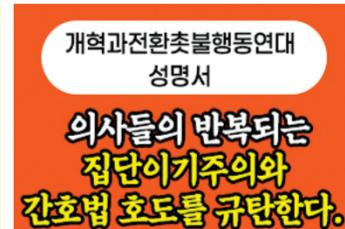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주세요!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



간호법 긴급 속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 주간 헤드라인 뉴스

01 의협, 간호법 날치기 하워주장논란
02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배제?
03 보건의료 환경변화, 간호법으로 대비해야

간호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간호법, 날치기 법안이 아니다



간호법안, 날치기 법안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



간호법 제정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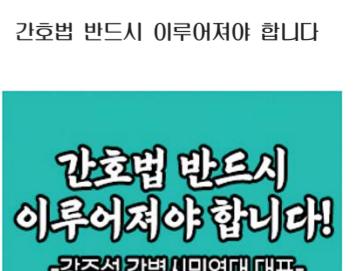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간호사는 왜  
불법으로 행위자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법으로  
간호인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대표-

